
		<h1>보도자료</h1> <p>2021. 6. 8.(화) 배포</p>			
보도일	<p><b>2021. 6. 8.(화) 국무회의 시작 시(1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  <b>인터넷·방송·통신 6.8.(화) 국무회의 시작 시(10:00)부터 보도 가능</b></p>				
담당과	재외동포교육담당관	담당자	과 장	최보영	(☎ 044-203-6799)
	학교안전총괄과		사무관	김영권	(☎ 044-203-6798)
			과 장	김태경	(☎ 044-203-6353)
			사무관	전수문	(☎ 044-203-6357)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시기·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
- ◆ 모든 대학은 매년 2월 말까지 안전사고 예방·조치, 안전교육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8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에 「고등교육법」 개정(2021.6.23.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한국어능력시험과 대학 안전관리계획의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 그동안 한국어능력시험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었지만, 시험에 대한 절차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은 갖추지 못하였다.
  - 또한, 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각 개별법에 따라 관리됨에 따라 대학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 이에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어능력시험 및 대학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장관은 매 학년도 외국인 등의 대학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국내외 한국어능력시험 시행하고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험 시행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 또한, 시험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시험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 등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조치기준도 마련하였다.
  - 아울러, 모든 대학은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매년 2월 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대학의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하고, 해외 한국어 교육 확대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 “보다 촘촘한 대학 안전망을 구축하여, 각종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 【붙임】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 한국어능력시험(TOPIK) 개요



대통령령 제            호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및 제4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2조의5(한국어능력시험) ①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은 국내외에서 매년 1회 이상 시행되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계획을 수립·공고해야 한다.

③ 한국어능력시험은 듣기, 읽기, 쓰기 및 말하기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한국어능력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1의2와 같다.

⑤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학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2]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제42조의5제4항 관련)

조치	부정행위
1.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	가.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나. 시험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행위 외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2.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 정지	가.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거나 본인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는 행위
	나.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다.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행위 외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3.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4년간 응시자격 정지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1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p> <p><u>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u></p>
<p><u>&lt;신 설&gt;</u></p>	<p><u>제42조의5(한국어능력시험) ①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은 국내외에서 매년 1회 이상 시행되어야 한다.</u></p> <p><u>② 교육부장관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계획을 수립·공고해야 한다.</u></p> <p><u>③ 한국어능력시험은 듣기, 읽기, 쓰기 및 말하기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u></p> <p><u>④ 한국어능력시험의 부정행위</u></p>

에 대한 조치는 별표 1의2와 같다.

⑤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붙임2

## 한국어능력시험(TOPIK) 개요

### □ 시험개요

- (시험 종류 및 방식) 2종(TOPIK I, TOPIK II), 지필시험
- (평가 영역 및 배점)

구분	평가 영역(문항 수)	배점(시험시간)	시험 등급		
TOPIK I	듣기(30) 읽기(40)	200점 (100분)	초급	1급	80점 이상
				2급	140점 이상
TOPIK II	듣기(50) 쓰기(4) 읽기(50)	300점 (180분)	중·고급	3급	120점 이상
				4급	150점 이상
				5급	190점 이상
				6급	230점 이상

※ 말하기 평가 도입 및 IBT 시스템 구축(~22)

- (지원자 수)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 수는 한류 확산, 한국어 보급,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시행국가 및 지역	72개국 283지역	70개국 255지역	76개국 267지역	83개국 282지역	42개국 179지역
지원자 수	250,141	290,638	329,224	375,871	218,869
전년대비 증감	43,363(20.9% 증)	40,497(16.2% 증)	38,586(13.3% 증)	46,647(14.2% 증)	157,002(41.8% 감)

※ '20년, 전세계 코로나19 확산으로 시험시행 연기·취소로 응시자수 감소

### □ 한국어능력시험 활용처

구분	관련 기관	관련 지침	활용처
국내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	· 외국인 유학생 국내 대학 입학·졸업 요건으로 토픽 활용 가능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 국내 대학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항목 중 '언어능력(한국어)' 지표로 토픽 2·3·4급 활용 ※ 대학 재학생 40% 이상 토픽 4급, 신입생 30% 이상 토픽 3급 보유가 평가지표로 활용
	법무부	「사증 발급 안내 매뉴얼」	· 20개 이상 체류 관련 자격에 반영
	국내 기업	기업의 직원 채용, 인사고과 지침 등	· 외국인 직원 채용, 인센티브 가점 부여 등
국외	대학	대학 학사지침	· 한국어학과 학점 인정, 졸업 요건 등
	한국 기업	기업의 직원 채용, 인사고과 지침 등	· 현지 직원 채용, 인센티브 가점 부여 등